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용적 가치(1)



정연웅  
특허청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

## 목 차

### I. 부당이득의 형태와 연혁

- 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III.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 IV. 불법원인 급여
- V. 무체재산권과 부당이득
- VI. 결론

〈고득은이 변호 명조는 다음호〉

## I. 不當利得의 形態와 沿革

### 1. 不當利得의 一般의 意義와 形態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은 침해금지청구권,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사전·사후의 구제수단으로서 경고, 증거보전, 생산방법의 추정, 신용회복조치,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절차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不當利得은 事務管理·不法行爲와 함께 契約에 기인하지 않고 債權·債務를 발생시키는 것(法定 發生原因)<sup>2)</sup>이다. 여기서는 不當利得과 관련된 國內外의 法令, 判決과 學說을 중심으로 부당이득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不當利得(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unjust enrichment)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또는 이득)을 얻고, 이득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손실자)에게 그 이익(또는 이득)을 반환토록 명하는 제도<sup>3)</sup>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제도에 관한 법규범을 不當利得法(Bereicherungsrecht)이

1) 特許新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8. 6.20. 264-266면.  
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1997. 6. 10, 987면.

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의 모습은 다음의 넷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 受益者의 積極的 財産의 增大

수익자의 적극적 재산의 증대에는 절대권의 취득, 채권의 취득,<sup>4)</sup> 점유<sup>5)</sup>의 취득<sup>6)</sup>, 수익자 명의로의 등기, 기대권의 취득,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독일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점유권을 물권으로 인정치 않으나, 점유를 사실상의 재산적인 가치로 인정하여 점유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sup>8)</sup>

나. 受益者의 消極的 財産의 增大

채무나 부담의 면제와 같은 소극적인 재산의 증대로서 이것 또한 부당이득의 모습으로 인정된다.

다. 他人의 權利 利用 및 他人의 役務 利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노무 등 역무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수익자는 권리의 취득 또는 노무의 확보를 위해 수익자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종래에는 비용 절감에 의한 수익자의 소극적인 재산증대로 파악하였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sup>9)</sup> 수익자가 얻은 역무

- 3)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취득으로 손실을 입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케 하는 것이 平均的 正義에 합치된다.[김상용, 채권각론(하), 법문사, 1998. 2.25, 21면]
- 4)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을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대판 1995. 12. 5. 95다2206)
- 5)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2. 11.24, 92다25830, 92다25847)
- 6) 김상용, 앞의 책, 22면 각주 참조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그 특별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며, 같은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5. 11. 28. 95다 18451)
- 8)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 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 (대판 1995. 8.22. 95다11955, 95다11962반소)  
'...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5. 7. 25. 95다 14664, 95다14671 반소)
- 9) '...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대판 1995. 5. 12 95다573본소, 95다580반소)
- 9) '...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판 1995. 3.28, 94다50526)



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비용절감이 아닌 역무제공에 의한 이득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인 재산증대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라. 精神的 苦痛에 대한 慰藉料 支給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질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은 그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sup>10)</sup>. 그러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질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니다. 산림훼손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석을 굴취하여 임야를 훼손함에 있어 그 훼손정도가 광범위하고 그 복구비만하더라도 임야의 교환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것이고, 그 임야에 조부모의 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흉하게 훼손된 상태대로 계속 남게 되어 있음을 알아 볼수 있는 때,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나 피고로부터 그가 얻은 이득을 반환받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배척만 할 것은 아니다.

한편 회사의 의뢰를 받아 상업광고디자인업자가 슬라이드필름을 제작하여 의뢰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한 경우라도 동 회사가 슬라이드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이때의 저작권의 침해는 당연히 저작권권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이 침해됨에 따라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

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위 필름을 제작하기까지에 투입한 아이디어의 창출 등의 무형적인 노력정도, 모형 및 필름의 제작기간, 그 제작의 난이도, 그 상업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sup>11)</sup>.

2. 實質的 利得 與否

여기서의 利得은 實質的인 利得인가가 문제된다.

즉,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의 利得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 하지만, 具體的 事實 關係에 직면해서는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이란 것이 어떠한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기에 뚜렷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이끄는 실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법률론은 법의 해석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법의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규정에 의해 용이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추상도를 낮추는 명석화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의 성립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원인 즉 이익보유의 정당화사유에 따른 사실적 관계의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목적물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기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의 유치라는 유치권의 본질적인 능력에 비추어서도 또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민법제324조제1항의 문리상으로도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을 가짐

10) 대판1991. 6.11 90다20206, 1991. 12.10 91다25628, 1992. 5. 26 91다38334.

11) 부산지법 1986. 11. 12. 86가단440판결. 확정.

은 물론이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단순점유하는 한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유치물을 사용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制度의 基礎 論爭

각종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그 기초<sup>12)</sup>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통일설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개별적으로 명백히 파악하려는 비통일설로 논쟁이 되며, 이 논쟁은 법률상 원인의 의의와 관련하여 전개된다.

#### 가. 統一說<sup>13)</sup>

##### (1) 公評說 · 正義說

부당이득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를 공평(공평의 원칙) 또는 정의(사회적 정의)에서 구하여, 우선 공평설<sup>14)</sup>은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독일민법, 프랑스의 많은 학자들이 이를 채용되고<sup>15)</sup> 독일의 Hedemann, 프랑스의 Rouast, Repert, Maury 등 판례의 지지도 받았다. 한편 정의의 관념에서 구하는 학자도 많았는데,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과의 사이에 사회적 정

의의 의미에 있어서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지도관념이라고 주장한 Gierke와 입법자의 정의관에 그 기초를 둔 Hedemann도 있다. 그러나 공평 또는 정의의 관념이 상당히 막연하여 법률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못 밝힌다는 비판을 받는다<sup>16)</sup>.

##### (2) 正法說

Stammler는 부당이득의 기초를 공평과 정의에서 구하는 설에서 벗어나 공평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공평대신에 정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즉 정법과 실정법과 사이의 모순을 조화시켜 주는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실정법에 의해 일어나는 권리의 변동이 그 실질에 있어서 정법에 의해 시인될 수 없는 것일 때에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득이 부당한 것이 되는가에 대해 공평설이나 정의설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당한다.

##### (3) 債權說 · 相對關係說

Collaz가 주장한 채권설은 이전 기타의 재산상 이득이 생긴 때, 그 이득을 발생하게 할 채권관계가 없는 때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것으로 해당되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득의 정당한 원인을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 채권설에 대한 보충에 의해 주장된 것이 Jung

12) 이 기초는 법률상 원인 없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부당이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상용, 앞의 책, 26면.

13) 김현태, 이태재, 곽윤직.

14)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이익, 손실, 이익과 손실간의 인과관계 및 法律上 原因의 欠缺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일률적인 설명을 가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해져 내려오던 바이었다. 물론 그러한 배후의 설명방식에는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統一의인 利害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한 이해는 우리 민족이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제741조의 단일한 일반조항을 갖고 있다는 것, 부당이득의 본질에 대한 공평설적 파악, 즉 形式的 · 一般的으로 정당시 되는 재산가치의 이동이 實質的 · 相對的關係으로는 정당시 되지 않을 경우에 공평의 이념에 따라서 그 矛盾을 당사자간의 實質的 · 相對的關係에 있어서 矯正하는 制度라는 觀點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적인 설명은 부당이득법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주지않는 內容이 없는 것으로 끝나기 쉽고, 나아가 일정한 法的原理의 무제한적 적용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대판 1984. 5.15, 84다108의 다수 의견)

15) 독일의 Hedemann, 프랑스의 Rouast, Repert, Maury 등.

16) 곽윤직, 앞의 책, 604면.



의 상대관계설인데, 부당이득에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당사자 사이의 급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와 그 급부없이 재산적 이익의 이동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로써 전자는 채권관계에 지나지 않고, 후자는 채권관계와 유사한 상대적 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인 사이에서 정당시되어야 할 상대적 법률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재산적 이익의 귀속을 규율하는 각 법률제도를 검토하여 공평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평설에 비해서 더 정확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17)</sup>.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시행 이후 지금까지 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공평설을 부당이득제도의 기초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당이득법이 기본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제741조에서 부당이득의 종류를 구분함이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이 손실을 입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非統一說<sup>18)</sup>

##### (1) Wilburg설

급부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법률행위적 취소, 급부반환청구권으로 파악)과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침해된 권리로부터의 계속적 효과의 청구권으로 파악)이 통일적 원리에 기인한다는 가정은 오늘날 법률학상 공리로서 통용되지만, 이 권리가 그 기초를 같이 한다

는 사실은 아직도 증명된 일이 없다면 그 기초를 각각 따로 따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타인의 재산에 의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수익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의의는 사회사정에 알맞게 이를 넓게 해석해야하나, Wilburg와 같이 좁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절대적 권리 또는 이익에 한정시킬 근거가 없으며, 그 자신도 채권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 von Caemmerer설

부당이득제도는 형식적인 법과 실질적인 정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조정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법이나 계약법과 동일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기 Wilburg설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상기 두 개의 유형만으로는 부당이득제도의 모든 유형을 망라할 수 없다면, 침해부당이득·타인의 재화로부터의 이득(비용부당이득)·구상부당이득<sup>19)</sup>의 세가지로 나누고, 다시 중간형 내지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로 각 경우의 이득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利得에 대해서 財産差額說<sup>20)</sup>을 주장하여 19세기 이래 지배적인 견해를 유지하였다<sup>21)</sup>.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서 부당이득제도의 기초를 달리 이해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독일민법 제812조 제1항 제1문에서 부당이득을 급부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와 급부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김주수, 앞의 책, 550면.

18) 김기선 336; 이은영 504.

19)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증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없다.....' (대판1996. 9.20, 96다22655)

20)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함으로써 그 결과 수익자에게 생긴 전체 재산의 증가로 이득의 개념을 잡는다. (수익자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 수익자의 부당이득후의 재산총액 - 부당이득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총액), 김상홍, 앞의 책, 76면.

21) 그러나 현재의 통설은 구체적 대상설(또는 취득이득설)이며,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구체적으로 취득한 목적물 그 자체를 이득으로 본다. 박윤직, 앞의 책, 646면.

4. 國內法令內 不當利得의 形態

국내법령내 부당이득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제2조 (국세) 부당이득세
- \* 형법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 파산법제4장 재단채권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 행정소송법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 \* 섭외사법제13조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 ① 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27조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 반환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의 당해 채무자 제32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1. 2.(생략)
-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 반환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3조 (부당이득세법의 적용)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7조 (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①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23. (구결 부당이득)
- \* 부당이득세법제7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 \* 국세기본법제2조 (정의)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이하 생략)
- \* 산림법제78조 (대부취소등) ①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한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 \* 도로법제80조의2 (부당이득금의 징수)
- \* 하천법제33조 (점용료등의 징수) ③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 ② ⑤ 부당이득금
-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제29조 (부당이득금의 산정)
- \* 국민의료보험법제44조 (부당이득의 징수)
- \* 국민연금법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 \* 노인복지법제16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3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 \* 의료보험법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
- \*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발특 9906